

별첨 ②

「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」
세부추진방안 ②

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

2018. 7.

금 융 위 원 회

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관	2
III. 현황 및 문제점	8
IV.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	12
1. 업무범위 명확화	13
2. 진입규제	15
3. 고객정보 제공 의무화	16
4. 정보보호 및 보안 책임 강화	17
V. 향후 추진계획	19

I. 추진 배경

-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, 정보주체인 개인이 소외되는 정보보호 문제가 대두
 - 개인이 자기정보를 관리·통제하기 어려워지면서, 소극적 정보보호만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한계
 -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도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, 데이터 기반 혁신의 혜택에서 정보주체가 배제될 우려도 제기
- 특히, 금융분야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 특성상,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문제가 지속
 -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제조·판매하면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최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
 -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도 함께 증대되나 그 정보가 적절히 제공·공시되지 못하는 실정
- 정보주체의 데이터 관리·활용을 지원하고, 금융소비자의 구조적인 정보 열위를 완화해 주는 산업적 기반도 미흡
 - 미국, EU 등에서는 다양한 펀테크기업이 출현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관리 지원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 중
 - * EU에서는 「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」(PSD2: Payment Services Directive 2)를 통해, 금년 1월부터 ‘본인 계좌정보 관리업(Account Information Service)’을 도입
 - 국내에서도 관련 펀테크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나, 서비스의 수준이 제한적이며 정보보호·보안 측면의 우려도 제기

→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,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(‘본인 신용정보 관리업’) 도입을 추진

II. 금융분야 마이데이터(MyData) 서비스 개관

1. 개념 및 유형

국내외 서비스 제공 사례를 기초로 정리

- **(개념)**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 ·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
 - (i) 본인정보의 일괄수집 · 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(ii) 금융상품 자문·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
 - 신용관리 등 본인정보 관리 ·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펍테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
- **(유형)**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, 재무·신용관리 지원, 금융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 등

- ① **(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)**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,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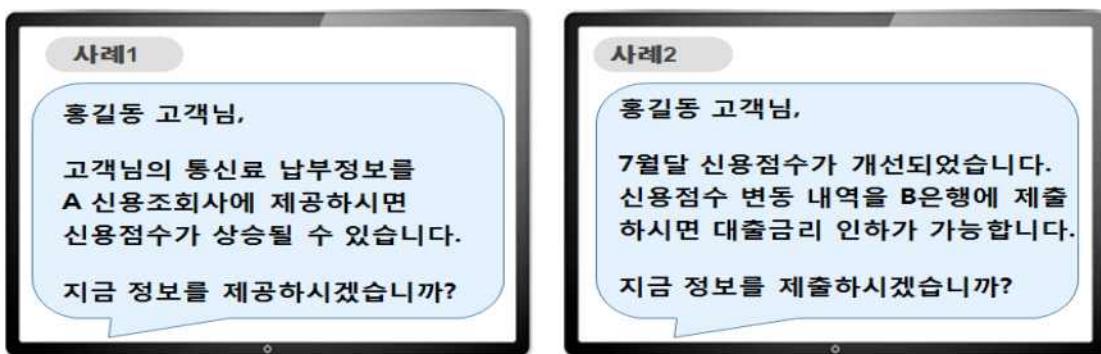


- ② **(재무현황 분석)**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, 재무위험,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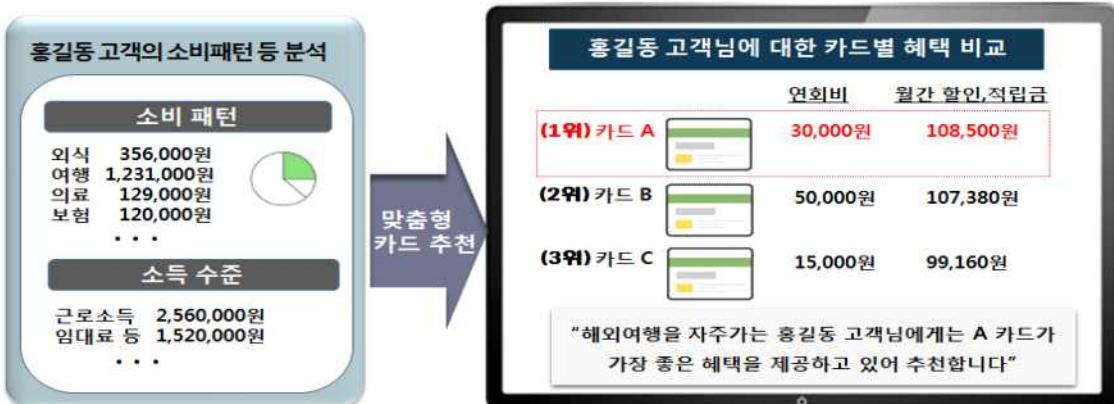
③ (신용관리·정보관리 지원)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*을 제공

- * (예) 부채비율·지출비중 등 재무행태 조정뿐 아니라, 개인신용평가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여 신용평점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출, 잘못 등록된 정보 삭제 등을 권고
- 필요시, 신용조회사(CB사)·금융회사 등에 긍정적 정보 제출, 부정적 정보 삭제·정정 요청 등 본인정보 관리업무도 수행



④ (금융상품 정보제공·추천)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상태·재무현황 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,

- 상품별 가격·혜택을 상세 비교하여,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
- * (예) (i) 특정 개인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 금리 대출상품을 추천
(ii) 특정 개인의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고 혜택 카드상품을 추천
-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상품과의 비교 등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



2. 기능 및 중요성

(1) 정보보호 및 데이터활용 측면

- 현행 정보보호 법제는 동의제도를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

※ 「신용정보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련 사항

- ① 사전적 선택 · 결정권 : 정보활용에 관한 동의권
- ② 보조적 권리 : 정보 열람청구권, 제공 · 이용사실 조회권
- ③ 사후적 통제권 : 정정 · 삭제 · 처리정지 요구권, 동의 철회권
- ④ 소송상 권리구제 : 징벌적 · 법정 손해배상, 침해금지 단체소송 등

- 그러나, 지능정보社会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개인 스스로 정보보호 · 관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짐

- 특히, 정보주체 스스로 복잡한 금융 · IT 기술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

※ 개인의 정보관리 실태조사 결과('14년, 정보화진흥원)

-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38.2%, 정보정정 · 삭제 · 파기요구권은 22.4%만 인지
- 실제로 본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해 본 사람은 약 7%에 불과 ('13년)

-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 · 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

-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 통제권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돋고, 필요시 해당 권리를 대리 행사하여 정보관리도 지원

- 금융회사 등 기업뿐 아니라 정보주체 개인도 데이터 활용의 편의(신용관리 · 재무분석 등)을 적극 향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※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정보주체 개인에 대해 일종의 정보계좌(Personal data account)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 가능

⇒ 향후 관련 법 · 제도, 문화 등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, 정보주체가 금전적 보상에 기반하여 개인데이터를 활용 · 유통하는 플랫폼*으로도 활용 가능

* [해외사례] Hub of All Things(英), Datacoup(美), 정보은행 / 정보신탁(日) 등

(2)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

-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, 금융상품 자체의 특성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기 어려움
 - (i) 정보제공 · 비교공시가 부족하여 금융상품의 비용·혜택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
 - 현재 금융상품 제조 · 판매자인 금융회사에게 소비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제공 · 공시(Full disclosure)*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* 금융투자상품 · 보험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· 설명의무,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교부 등
 - 인지(認知)에 필요한 시간 · 비용 등을 고려 시,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
 - 더욱이, 표준화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속성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·평가하기 어려움
 - (ii)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부족하여, 개별 소비자로서는 유의미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
 - 금융상품은 개별 소비자의 신용도, 소비패턴 등에 따라 상품 구조·가격 등이 차등화되어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나,
 - 현재의 정보제공 · 공시제도 등은 금융상품 자체의 속성에 대한 정보(Product attribute information)* 위주로 설계
 - *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용패턴, 행태 등에 대한 정보(Product use information)가 함께 제공될 필요
 - (iii)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서비스의 공급이 크게 부족
 - 독립 금융상품 자문업이 미도입된 가운데,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문서비스는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운영
 -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각각의 판매채널을 직접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·비교 →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상품 선택

-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산업적으로 활성화되면 정보제공·공시의 질이 개선되고 자문서비스 확대 등으로 소비자 보호도 강화

① 간편한 정보제공·비교공시(Smart disclosure) 제공

- * 그간 공공 부문, 협회 등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(예: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), 상품종류별 평균 혜택·비용 등을 공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
-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 개별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상품과 정보를 추려내어 알기 쉽게 표준화하여 제공
- 간편한 정보제공·비교공시를 통해 제한된 시간·비용 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

② 소비행태·재무현황 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

- 개인의 소비행태·위험성향 등 소비자 본인 정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
- 상품의 비용·혜택 등이 소비자의 행태 등에 따라 계약 이후 변동되는 특성* 등을 감안한 실시간 맞춤형 정보 제공도 가능

* (예) 중도상환 여부에 따른 상환수수료,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가능성 등

③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가격대의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제공

- 대량의 데이터 처리·분석 업무와 연계함에 따라 기존 고비용 구조를 탈피*하여 낮은 비용의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

※ (상세) 금융상품 자문서비스의 비용구조 개선이 가능한 이유

- 정확한 금융상품 자문을 위해서는 상품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도 해당 고객의 위험성향, 행태 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
⇒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수 고객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·분석함에 따라 단위당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
- 일반 소비자에게도 금융상품 종합 자문서비스가 제공되어 구조적인 소비자의 정보열위(knowledge disadvantage)를 완화

(3) 산업적 측면

□ (**금융산업 전반**) 금융상품간 비교·공시가 강화되어 금융 산업 내에 경쟁과 혁신이 촉진

- 정보 우위에 기반하여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회사들의 영업 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될 가능성

※ Richard Thaler 교수(美 시카고대, '17년 노벨경제학상, 「Nudge」 공저)

- 가격 비교가 어려운 금융, 의료, 통신 분야에서 기업들은 “불명확한 정보 제공, 소비자의 무지·태만 등에 기대어 이익을 얻을 수 있음”
⇒ 정보제공·비교공시가 효율화·단순화될 경우 “합리적 가격에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만 살아 남을 것”

- 금융회사에 집중된 고객 데이터의 공유가 확산되면서 대형 금융사의 정보독점 및 이를 통한 시장영향력 집중이 완화

※ 「PSD2」의 ‘본인 계좌정보 관리업’ 도입에 대한 평가(Economist誌, 17.3월)

- 본인정보 관리업 도입에 따른 ‘기술 주도의 파괴적 혁신’(“Technology-driven disruption”)으로 유럽연합 내 은행산업의 대형사 중심 독과점 구조가 완화
- 유럽연합의 68%의 은행(Retail banks)은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 도입 시 해당 은행의 시장영향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('16년, PwC)

□ (**핀테크·데이터산업**)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수집·유통 하는 정보중개업자(Financial Infomediary)로 산업적 역할 수행

- 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면서, 전통적인 금융 산업·데이터산업의 잠재적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할 것*

* 미국의 경우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연간 매출액 약 65.9억달러, 고용인원은 약 1.3만명으로 추정('17년 기준)

□ (**국민경제 전반**) 고객 데이터에 대한 수집·분석이 활성화될 경우,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수요 등에도 대응

- 전후방 연관효과로 고부가가치의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이 형성되어, 임금·만족도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

III. 현황 및 문제점

1. 본인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현황

- ◆ '10년 이래로 신용조사(Credit Bureau), 펀테크업체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수준의 정보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어 옴
 -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
- 신용조사(CB사)는 유료 고객에 대해 개인신용평점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중
 - 본인 신용평점 및 변동내역, 평점 산정의 기초가 된 신용 정보 상세내역(예: 금융연체, 카드사용 실적) 등의 정보를 제공
 - * CB사 본인정보 조회서비스 영업수익 : ('11년) 243억원 → ('17년) 1,399억원
- 일부 펀테크 업체의 경우,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에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정보 일괄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
 - 나아가, CB사·금융회사 등과 제휴하여 신용평점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업체도 등장
- ※ 공공부문 등에서도 기초적 수준의 계좌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

기관	업무	서비스 정보
금융감독원	연금포털	- 연금 계약정보 (납입액, 적립액, 예상연금액 등)
금융결제원	계좌통합관리 (어카운트인포)	- 은행 계좌정보 (은행명, 계좌종류, 개설일, 잔고 등)
생명/손해보험협회	내보험찾아줌	- 보험 가입내역 (종류, 금액, 가입시기 등)
신용정보원	내보험다보여	- 포인트 정보 (잔여 포인트, 소멸예정 포인트 등)
여신금융협회	카드포인트통합조회	

2. 문제점

(1) 시장발달 초기단계로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

- 증대되는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수요에 비해 아직까지 관련 서비스 이용 규모는 양적으로 미미한 수준

-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앞서 정보 통합조회에 기반한 신용·정보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

※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핀테크업체의 회원수 비교

- (美) Credit Karma 6,000만명('17), Mint 2,000만명('16), Yodlee 4,500만명('13)
- (韓) 국내 업계 1위인 핀테크 업체는 최근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

- 다양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주요국에 비해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준은 질적으로도 미흡한 상황

- 미국 등의 경우 다수의 핀테크업체가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

※ 美 주요업체 특화 서비스 현황

- (Credit Karma) 신용평점 개선방안 제시, 세금신고서 작성 등 세무지원 서비스
- (Mint) 공과금 납부, 이상거래 알림 등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, 재무 Q&A
- (CreditRepair) 장기·맞춤형 신용평점 상승을 위한 중·저신용자 대상 전략적 서비스 (예: 오등록 정보 확인→평점 변동 모니터링→Alarm 등)

- 우리의 경우, 아직까지 정보조회의 범위도 제한적이고 여타 서비스도 신용카드 상품 추천 등에 한해 제공되는 실정

- 고부가가치 데이터 서비스 제공보다는 공공부문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리접속하여 수익을 내는데 주력하는 업체^{*}도 등장

※ 업체의 통합조회 앱에서 고객 본인인증 요청^{*} → 공공부문의 통합 조회시스템에 고객 명의로 대리 접속 → 시스템 조회결과를 업체의 앱에서 재배치 → 업체 명의로 고객에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

* 본인인증 처리는 공공부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하며, 그 비용도 해당 공공부문이 부담

(2)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이 취약

-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사항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
 - 특히, 「신용정보법」상 '신용조회업무'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, CB업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구분이 불명확

※ 현행법상 신용조회업의 정의는 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범위를 '금융회사 등 제3자'로 제한하지 않음

⇒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한 신용정보를 '정보주체 본인'에게 제공하는 것도 신용조회업으로 해석될 소지

- 또한, 금융투자상품 외 금융상품 자문업에 대한 규율체계*가 확립되지 않은 점 등도 산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요인

* 주식·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자문 → 「자본시장법」상 투자자문업
대출·신용카드 등 자문 →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(안)상 금융상품자문업

- 한편, 신규 팁테크업체들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고객 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려운 상황

- 현재는 팁테크업체는 개별 금융회사와 자율적인 정보제공 계약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

- 다만, 기존 금융사들의 소극적 태도로 본인정보 일괄조회 서비스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고객데이터 확보에 애로

- 특히, 서비스 제공에 핵심 기반이 되는 정보 확보가 불안정한 계약관계에 의존함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한계

* 고객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팁테크업체에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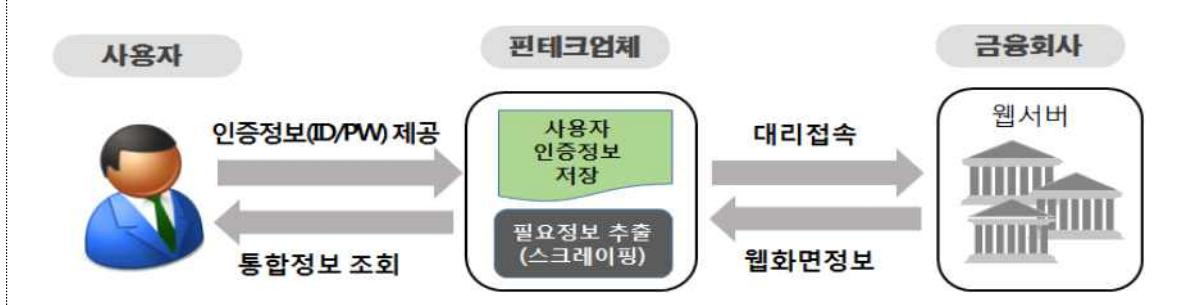
※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중단 해외사례

: '15.11월, 美 JP Morgan, Wells Fargo 등은 정보보안, 서버 과부하 등을 이유로 팁테크업체(Mint사)에 고객 정보 제공을 일시 중단

(3) 개인정보 수집·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·보안 위험에 노출

-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로그인정보, 공인인증서 등으로 고객계좌에 대리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
 - 고객계좌에 직접 접속한 후, 스크린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**스크린 스크레이핑(Screen Scraping)**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

<스크레이핑 방식의 정보 수집·처리 과정>



- 이러한 방식은 핀테크업체가 고객의 인증정보를 저장·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보보호·보안상 많은 문제를 내포

- ① 고객 인증정보가 핀테크업체에 노출 \Rightarrow 불건전 업체에 의한 정보유출 우려가 있고, 해킹 등의 표적이 될 가능성
 - 특히, 저장된 인증정보가 삭제·파기되지 않고 장기간 저장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

※ 스크린 스크레이핑 관련 해킹사건 ('15.10월)

: 호주 멜버른의 한 회계 법인의 스크린 스크레이핑 소프트웨어가 해킹 당해 고객 및 직원 1600명에 대한 성명, 주소,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 상세 내역 등 금융정보가 유출

- ② 정보주체인 개인이 아닌 핀테크업체가 정보수집 범위를 결정 \Rightarrow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수집의 우려
- ③ 형식적으로는 고객이 본인의 인증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 \Rightarrow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

IV.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

< 기본 방향 >

- 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법률상 규율체계를 도입하여 개인의 정보·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
 - 현행 신용조회업(Credit Bureau)과 명확한 구분 등을 통해,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
 - 소비자의 신용관리·자산관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수·겸영업무를 허용
- ◇ 자본금 요건, 금융권 출자의무 등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여 금융분야에 창의적인 Player들의 진입을 다양하게 유도
 - 다만,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'허가제'를 도입·운영
 - * 데이터 기반 핀테크 생태계의 조성, 금융상품의 제조·판매와 자문·추천 간의 이해상충, 대형사 정보독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- ◇ 정보주체의 주도 하에 정보보호·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·기술적 여건 마련
 -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·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'개인신용정보 이동권'^{*} 도입(금융회사→마이데이터 사업자)
 - *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(GDPR)에서 새로이 도입된 정보주권인 'Right to Data Portability'를 신용정보법 체계에 맞추어 국내에 수용
 - 금융회사-사업자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(표준 API)의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·남용 가능성을 차단
 -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, 사업자의 정보활용·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보보호·보안에 만전

1 업 신설 및 업무범위 명확화

- ◆ 「신용정보법」 상에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('본인 신용정보 관리업')을 별도로 신설
-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되, 신용관리·자산관리·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영·부수업무를 허용

① 고유업무 :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

- ①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②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제공받아
- ③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(業)으로 정의
- ※ 신용조회업(CB)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제3자(금융회사 등)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마이데이터 산업과 구분
- 본인의 자산·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망라

※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(案)

- (i) 은행·상호금융·저축은행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
- (ii) 신용카드·직불카드 거래 내역
- (iii) 은행·상호금융·저축은행·보험사 등의 대출금 계좌정보
- (iv)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정보 (단, 보험금 지급정보는 제외)
- (v)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·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 투자상품(주식·펀드·ELS 등)의 종류별 총액 정보
- (vi)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내역 등의 신용정보

② 부수업무 : 정보관리 및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

① 정보계좌(Personal data account) 업무

-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외에도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 신용정보*를 관리·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도 허용

* (예) 전기·가스·수도료 납부 정보, 세금·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

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(“정보관리”) 업무

- 개인의 신용평점 개선, 금리인하 요구 등을 위한 프로파일링 대응권*의 대리행사 등 정보관리 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

* (예) 신용평가·금리산정 등에 활용된 기초정보의 확인 요구, 오등록 정보 정정 청구
(상세 내용은 「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」(5.10) p.14 참조) **(참고 1)**

- 이를 통해,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·CB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요구, 이의 제기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

③ 데이터 분석·컨설팅 및 제3자 제공 업무

- 통합조회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재무현황,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 분석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와,
- 보유 데이터를 활용*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, 창업기업 등 제3자에 제공하는 업무도 부수업무로 허용

* 다만, 명시적인 동의를 한 고객 데이터에 한하여 제3자 제공을 허용

③ 겸영업무 :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

① 「자본시장법」 상의 투자자문·일임업

- 이를 통해, 고객 본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의 금융투자상품 자문 등이 가능

② 「금융소비자보호법(안)」 상의 금융상품자문업

- 다만, 현재 금융상품 자문업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부재 → 우선, 금융상품 추천·비교공시를 부수업무*로 허용

* 추후 자문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정비된 이후 겸영업무로 전환

※ EU에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과의 겸영을 허용한 지급결제 지시업(Payment initiation service) 등 전자지급결제 업무도 관련 법령의 정비 추이를 보아가며 겸영업무 허용 여부를 검토

2 진입규제

- ◆ 자본금 요건 등은 최소화하여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되, 정보보호 · 보안, 산업생태계 측면을 감안, 진입규제를 설계

① 등록제 대신에 허가제를 도입

- 정보보호 · 보안, 겸영·지배주주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가 필요한 점을 감안

※ ①핀테크산업 생태계 조성, ②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, ③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허가할 계획

② 자본금 요건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

-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하되,
 -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 · 관리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

③ 인적·물적 허가요건

- (인적요건) CB업과 달리, 창의적인 Player에 의한 데이터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되,
 - CB ·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, '신용정보 관리 · 보호인'은 반드시 두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철저히 대비
- (물적요건 등)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설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· 물리적 보안시설 등 구비

④ 데이터산업에 창의적인 Player가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,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기관 50% 출자의무 등은 두지 않음

3 고객정보 제공 의무화

◆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, 그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의무화

① 정보주체에게 금융기관 등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'개인신용정보이동권')를 제도적으로 보장

*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기관(금융회사 등)에게 본인정보(사본)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

○ '정보주체'가 능동적으로 정보이동을 '요구'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정보활용 요청에 대한 수동적인 '동의'와는 구분

②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로 금융회사 등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고,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

○ (의무 제공정보 범위) 통합조회·재무분석 등 원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* 제공

* (예) 소비패턴 분석 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계열 데이터도 제공할 필요

- 다만, ①민감정보*, ②개인정보를 기초로 금융기관 등이 추가적으로 생성·가공한 2차 정보** 등은 제외

* (예) 보험금 지급정보 : 피보험자의 병력 및 사고이력 등을 포함

** (예) CB사의 개인신용평점, 금융회사가 산정한 자체 개인신용평가(CSS) 결과

○ (정보 제공방식) 금융회사 등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(표준 API*)을 이용

*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: 표준화 작업을 위해 금융회사·마이데이터사업자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

- 원칙적으로 은행·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 등에 API 구축 의무를 부여하되, 규모·거래빈도 등을 감안하여 중계기관*도 활용

* (예) 신용협동조합 등의 경우, 해당 중앙회 등이나 신용정보원 등

4 정보보호 및 보안 책임 강화

◆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에 기반하여 정보보호·보안상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제·감독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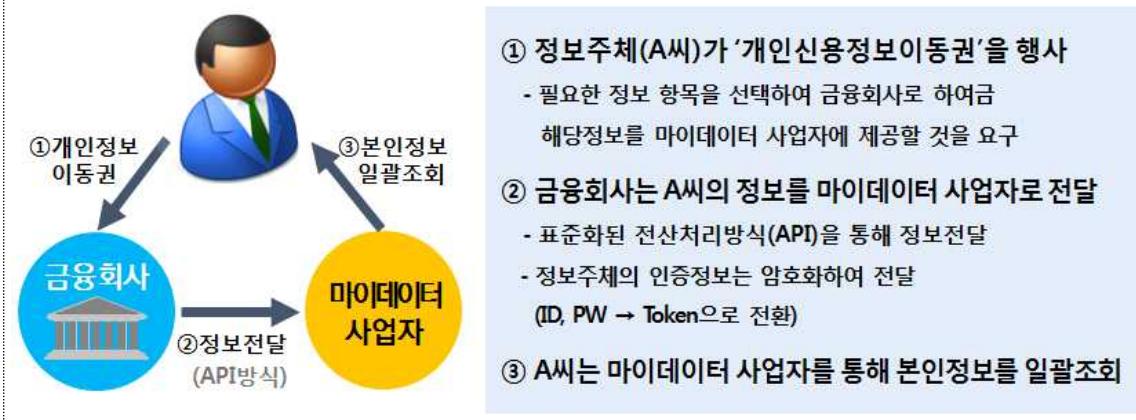
①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마련

-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을 의무화
 - * 다만, 마이데이터의 비대면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(전자문서, 유무선통신 등) 방식을 허용
- 금융회사 등은 고객 데이터의 제공에 앞서 해당 고객의 정보 이동권 행사의 명시적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확인할 의무
 - ※ 정보활용 범위·영향 등이 광범위한 만큼, 정보주체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이동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본인인증이 필요

② 정보수집 과정의 안전성·보안성 강화

- 현재 활용 중인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과정을 전반적으로 정비
 -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 ([참고 2](#))

< 고객데이터 수집·처리 개선 방안 (API방식) >



< 정보보호 · 보안상 개선 기대효과 >

① (인증정보 노출 차단)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 · 활용하지 않고 암호화한 대체정보^{*}를 활용

* (예) ID, PW 등 인증정보를 Token으로 전환하고 Token은 주기적으로 변경 · 삭제

② (정보주체의 통제·관리 강화) 정보주체 스스로 필요정보를 요구
⇒ 필요 이상으로 정보 수집하는 것을 사전적에 방지

③ (전산처리 표준화) 정보보안기술을 적용^{*}한 표준API 방식을 이용 ⇒ 보안성이 강화되고, 신생업체도 손쉽게 이용 가능

* (예) 해킹 발생시 개인정보 자동 폐기 및 접근통제, 개인정보 사용기간 한정 등

※ 해외사례 등을 감안, 현행처럼 고객의 인증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의 정보제공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 금지*

* EU에서도 고객데이터 제공 관련 규제기술표준(RTS)을 마련하고 일정 유예기간 (18개월) 경과 후 기존의 스크린 스크레이핑 활용을 제한 (PSD2)

③ 정보사고 발생시 사후구제수단 마련

- 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
 - 구체적 보험가입 규모는 국내외 사례, 마이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

* EU에서도 본인계좌정보관리업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(PSD2)

④ 체계적인 검사 · 감독체계 구축

-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·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적 평가체계를 구축
 - 자체적인 내부관리체계를 마련 · 시행토록 하고 금융보안원 등 자율규제기구의 점검, 금감원 검사 등 중첩적 평가체계 구축

※ '19년 도입 예정인 금융권 정보활용 · 관리 상시평가제를 확대 · 적용([참고 3](#))

V. 향후 계획

-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·정착되어 국민의 삶에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
 - 관련 법·제도 및 기술적 여건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
 - 금년 하반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'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' 관련 법개정 사항을 담은
 -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추진
 - 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혼란 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
 - 유관기관, 금융·핀테크·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표준 API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도 병행
- ※ 금융위는 금감원·신용정보원·금융보안원, 금융업권별 협회, 핀테크산업 협회 등으로 「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」를 구성·운영 중

참고 1

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요

* “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” ('18.5.10.) 발표 내용

1. 프로파일링(Profiling) 개념

- 개인정보의 기계화·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개인의 성격, 행태, 취향 등을 분석·예측하는 행위
- 맞춤형 상품 개발, 고객관리 등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으나, 정보주체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한 보완장치 필요

2. EU의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사례 「일반 개인정보보호법(GDPR)」

- ① 프로파일링 과정·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②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대응권 보장 (GDPR '18.5월 시행)
 - * ① 프로파일링의 근거·기준 및 개인에게 미치게 될 영향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전달토록 함
 - ② 프로파일링 근거·기준에 대한 정보주체의 의견표현·이의제기권 보장, 맞춤형 마케팅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도입

3. 국내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방안

- 개인신용평가 및 일정한 금융거래에 대해 개인의 대응권을 보장
 - (개인신용평가)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·점수에 관한 설명요구·이의제기권*을 폭넓게 인정
 - * 모든 개인에게 ①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, ②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보 정정청구 및 ③ 평가 재심사 요구권 등
 - (금융거래) 빅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된 개인 평가을 기초로 하는 금융거래*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 대응권**을 도입
 - * (예) 신용카드사의 맞춤형 혜택 제공, 보험료 자동산정 시스템 등
 - ** ① (설명요구권) 자동화된 개인 평가의 근거·기준 등에 대한 설명 요구
 - ② (의견표현권) 평가상 혜택을 받기 위한 본인의 긍정적 정보 제출권
 - ③ (이의제기권) 자동화된 개인 평가의 기초가 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평가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

참고 2 ‘스크린 스크레이핑’ 방식과 ‘표준 API’ 방식의 비교

- **(고객 인증)** API 방식의 경우 인증 주체가 fintech업체에서 정보주체인 이용자로 변경됨에 따라 고객정보접근권을 정보주체가 확보하고 스스로 통제가 용이

스크레이핑 방식	API 방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이용자가 인증정보를 fintech 업체 서비스에 입력, 인증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 시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필요한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로그인하고 필요한 접근권한을 부여 후 허용(fintech업체 서비스에 인증정보 입력 불필요)

- **(정보 처리)** API를 사용함에 따라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 수집 자체를 차단할 수 있어 정보에 접근 통제가 용이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추가 강화 가능

스크레이핑 방식	API 방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인터넷 스크린에 보여지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필요한 서비스에서 제공한 API를 이용하여 접근이 허용된 필요정보를 수신

- **(표준화)** 신생 fintech업체에서 표준화된 API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·활용 등이 가능해져 시장 진입이 용이해져 경쟁 촉진 및 혁신 성장 지원 가능

- 스크레이핑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 구성 환경 변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 가능

스크레이핑 방식	API 방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각 서비스의 임의 출력내용을 각각 추출하는 방식으로 표준화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API 및 데이터 포맷에 대한 표준화 가능

- **(정보보호·보안)** 고객의 중요정보를 서버 또는 모바일 앱 내 저장 관리하지 않고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한 API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을 감소

스크레이핑 방식	API 방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중요정보(ID/PW) 직접 저장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중요정보 대신 허용권한증표(token) 관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해킹 시 중요정보(인증정보 등) 유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해킹 시 토큰 폐기 처리·사용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 수립 가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필요 이상의 정보 접근 가능■ 이용자 중요정보 남용 또는 악의적 행위 활용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정보 접근 통제 용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서비스 탈퇴 시 입력한 인증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 필요(불편하고 번거로움 발생 및 미변경 시 2차 유출 피해 발생 우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서비스 탈퇴 시 토큰을 무효화 처리 또는 토큰의 사용기한 만료 시 자동으로 인증불가 처리 가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안 대책이나 보안 기술 적용은 곤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 및 보안기술 적용이 가능

참고 3

금융권 정보활용·관리실태 상시평가제 개요

* “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” ('18.5.10.) 발표 내용

1. 평가체계

- ①금융회사 자체평가, ②자율규제기구^{*}의 점검, ③금감원 검사 등 중첩적 평가체계를 구축

* 금융분야 정보보호 관련기관으로 신용정보원·금융보안원 등 금융위 지정기관

2. 평가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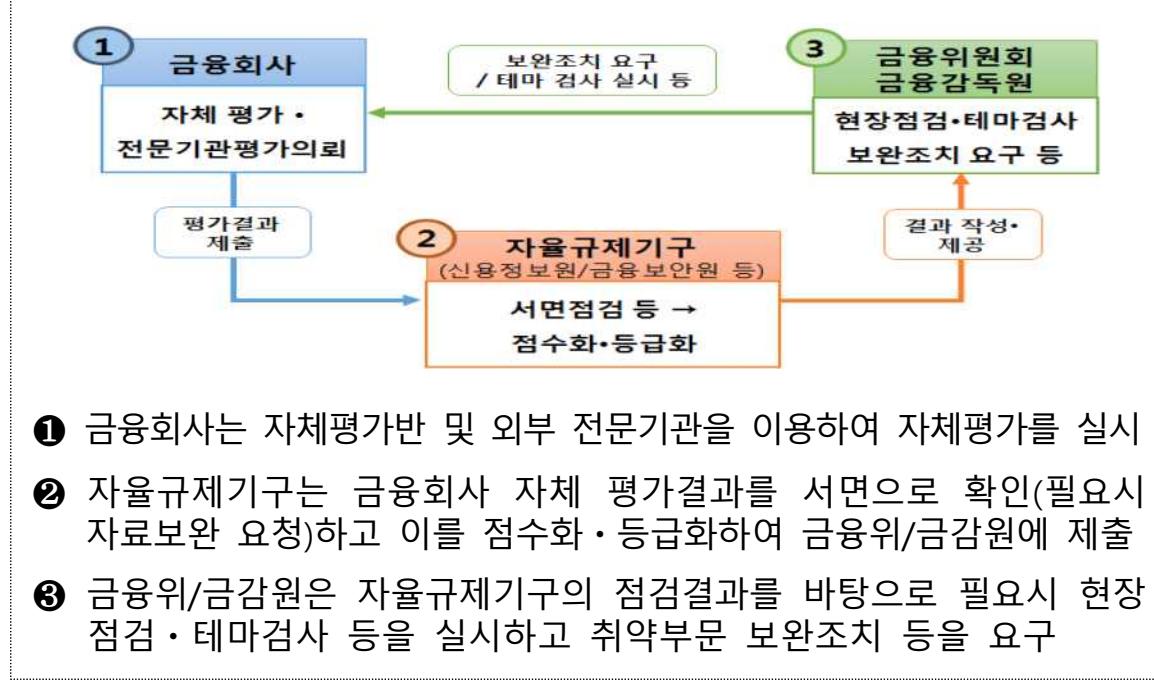
- 신용정보법 규정에 근거한 8개 대항목* 및 72개 세부항목

* ①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, ②제공, ③처리위탁, ④안전한 보관, ⑤파기, ⑥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, ⑦내부통제, ⑧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

3. 평가결과·피드백

- 자율규제기구는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서면 점검하고 결과를 점수화·등급화하여 금융당국에 제출
 - 금융당국은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필요시 현장점검, 테마 검사 등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

《 금융분야 개인정보 활용·관리 실태 상시평가 흐름도 》



- ❶ 금융회사는 자체평가반 및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
- ❷ 자율규제기구는 금융회사 자체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확인(필요시 자료보완 요청)하고 이를 점수화·등급화하여 금융위/금감원에 제출
- ❸ 금융위/금감원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현장 점검·테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